

2026

종자기사 등 시험대비 식물신품종보호법

엠북 농축산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✦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✦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
- ✦ 1시간 9분 완성

도서명 : 식물신품종보호법

ISBN : 979-11-7393-218-2

발간일 : 2026-03-24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7,000원



식물신품종법

식물신품종 보호법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(p9)

제3장 품종의 명칭(p97)

제4장 보칙(p108)

제5장 벌칙(p123~127)

[약어]

농림부는 농림축산식품부

해수부는 해양수산부

장관들은 농림부장관, 해수부장관

공동부령은 농림부/해수부 공동부령

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
국가등 국가, 지자체

심판위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

보호/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, 전용실시권자

설정등록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

일반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

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
- 농림수산업의 발전 이바지

2. 정의

가. 종자

1) 종자

- 증식용/재배용 씨앗, 버섯 종균, 묘목, 포자, 영양체인 잎, 줄기, 뿌리

2) 수산식물종자

a) 수산식물 씨앗, 포자, 영양체인 잎, 줄기, 뿌리

b) 수산동물 수정란과 다음 수산동물 어린 개체

① 척추동물 중 양서류, 자라류

② 무척추동물 중 다음 수산동물

- 연체동물 중 두족류

- 극피동물 중 성게류, 해삼류

- 절지동물 중 갑각류

- 환형동물 중 개불류, 갯지렁이류

③ 척색동물 중 미색류

나. 품종

-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,

-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,

-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

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

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

다. 육성자는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해 개발한 자

라. **품종보호권**은 법에 따라 품종보호 받을 권리 자에 주는 권리

마. **품종보호권자**는 품종보호권 가진 자

바. **보호품종**은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

사. **실시**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수출, 수입하거나 양도/대여 청약(양도/대여 위한 전시 포함)

3. 법에 따라 **품종보호**받는 **대상**은 모든 식물

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

4~105조

제1절 통칙

1.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

가) 재외자(국내 주소나 영업소 없는 자)는

-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**품종보호관리인**을

선임한 재외자(법인은 대표자)가 국내에

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

- 품종보호관리인(재외자의 품종보호

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가진
자)에 의하지 않으면,

-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부, 해수부, 심판위
절차(이하 품종보호 절차)를 밟을 수 없고
법/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 소
제기 못함

나)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
모든 품종보호 절차와 법/명령에 따라
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 대리

다)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해 등록된
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
선임/변경, 대리권 수여/취소에 관해

등록안하면 3자에 대항 못함

라) 재외자는 설정등록을 할 때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 선임 등록, 변경 등록 요

2. 대리권의 범위

-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가진 자로부터

품종보호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 받지 않으면 다음 행위 못함

가) 품종보호 출원 변경/포기, 취하

나) 청구/신청 취하

다) 우선권 주장/취하

라) 심판청구

마) 복대리인 선임

3. 품종보호 절차 밟는 자의

대리인(품종보호관리인 포함, 이하 같다)의

대리권은 서면으로 **증명**

4. 복수당사자의 대표

가) 2인 이상이 품종보호 절차 밟을 때 다음

행위 이외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

- 품종보호 출원 변경/포기, 취하

- 청구/신청 취하

- 우선권 주장/취하

- 심판청구

나) 예외

- 대표자를 선정해 장관들(심판청구는 심판위
위원장)에 신고한 때

· 신고시 대표자는 서면으로 대표자로 선임된
사실 증명

5. 기간의 연장 등

가) 장관들, 심판위 위원장은 교통 불편

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청구에 의하거나

직권으로 심판 청구기간, 품종명칭등록

이의신청 이유 등 보정기간 연장 가능

나) 장관들, 심판위 위원장, 심판장, 심사관은

품종보호 절차 밟을 기간을 정한 때 청구에

의하거나 직권으로 기간 연장 가능

다) 심판장/심사관은 품종보호 절차 밟을
기일을 정한 때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
기일 변경 가능

6. 절차의 보정

- 장관들, 심판위 위원장은 품종보호 절차가
다음에 해당시 기간을 정해 보정 명령 가능

가) 대리권의 범위나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
위반

나) 법/명령에서 정하는 방식 위반

다) 수수료 미납

7. 절차의 무효

- 장관들, 심판위 위원장은

가) 보정명령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 안한 때 품종보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

나)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14일내 또는 기간 끝난 후 1년내 보정명령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효처분 취소 가능

다) 무효처분 취소처분시 지체없이 보정명령 받은 자에 처분통지서 송달

8.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

- 서류는 물건 포함

가) 법/명령에 따라 장관들이나 심판위